

### [서식 예] 답변서(대여금 청구에서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경우 항변)

# 답 변 서

사 건 2000가소000 대여금

원 고 000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 1. 이 사건의 경위

- 가. 원고는 20〇〇. 〇. 〇. 피고에게 금 3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돈의 지급을 구하고 있습니다.
- 나. 피고는 원고의 친구인 000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며, 원고가 000에게 가지고 있는 채무 30,000,000원을 없애달라고 요청하였고 20○○. ○. 그당시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도 남아 있습니다. [을 제1호증 문자메시지]
- 다. 그 뒤 20〇〇. 〇. 〇. 원고의 친구 000은 원고에게 30,000,000원의 채무를 면제해 주었고 당시에 확인서도 작성했습니다. [을 제2호증 확인서]

#### 2. 원고의 다른 채무변제로 인한 피고 채무의 소멸

가. 민법 제472조는 변제받을 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는 채권자가 이익을 받



은 한도에서 효력이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비록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금을 돈으로 갚지는 않았지만 원고의 채권자인 소외 000에게 30,000,000원을 건네면서 원고가 소외 000에게 부담하던 채무를 면제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소외 000이 원고의 채무를 면제해줌으로 써 원고가 더 이상 소외 000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이는 위 민법 제472조에서 정한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채무는 소멸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증 명 방 법

- 1. 을 제1호증 문자메시지
- 1. 을 제2호증 확인서

# 첨 부 서 류

1. 위 증명방법

각 1통

1. 부본

1통

2000. 0. 0.

위 피고 〈〉〉〉 (서명 또는 날인)

## ○○지방법원 제○○민사단독 귀중



제출법원	본안소송 계속법원
제출부수	답변서 1부 및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 제출
답변서의 제 출	<ul> <li>·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함(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법원은 피고가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음.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함(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li> <li>·상고심에서 피상고인은 상고인의 상고이유서를 송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428조 제2항).</li> </ul>
의 의	답변서는 피고나 피상소인이 본안의 신청에 대한 답변하려는 사항을 기재하여 최초로 제출하는 서면을 말함(민사소송법 제148조, 제428조, 제430조).
기타	답변서는 소장의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과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으로 구성하는데,  ·청구취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취지로 작성  ·청구원인: 원고의 청구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인정할 부분과 부인할 부분을 구분, 부인할 부분에 대하여 이유를 밝히고, 인정할 부분에 대하여도 항변사유가 있으면 항변과 동시에 이유를 밝혀야 함.  ·당사자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마저 제출하지 아니하여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결과 의제자백(자백간주) 된 피고들과원고의 주장을 다툰 피고들 사이에서 동일한 실체관계에 대하여 서로 배치되는 내용의 판단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53789 판결).  ·응소관할이 생기려면 피고의 본안에 관한 변론이나 준비절차에서의 진술은 현실적인 것이어야 하므로 피고의 불출석에 의하여 답변서 등이 법률상 진술 간주되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함(대법원 1980. 9. 26.자 80마403 결정).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에 대한 주장을 부인하는 취지의 피고의 답변서가진술되거나 진술 간주된 바 없으나 동 답변서가 제출된 점으로 미루어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원고의 청구를 다툰 것으로 볼 것임(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1424 판결).